



# LEGAL UPDATE

엔터테인먼트

Mar. 2023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 전망-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3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률안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으로,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 1. 배경

국내 문화산업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제작 및 유통 방식의 복잡·다양화 등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아래와 같은 개별 법률이 적용되어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하던 고 이우영 작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입법 미비 이슈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률	내용	제재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li> </ul>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행위 금지 일반 규정</li> <li>•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요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시 관계부처 시정조치 요구</li> </ul>
콘텐츠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유통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중개시설 제공 의무 규정</li> <li>• 불공정행위 금지 일반 규정</li> <li>• 지식재산권 일방적 양도 요구 금지</li> <li>•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시설 제공 의무 및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시 관계부처 시정조치 요구</li> </ul>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li> <li>• 유통질서 확립 관련 일반 규정</li> <li>• 사재기 및 구매강요와 이에 따른 소비자오인 유발 행위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질서 확립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질서 확립 관련 일반 규정</li> <li>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사재기 행위 또는 구매강요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질서 확립 관련 일반 규정 위반시 행정조치</li> <li>사재기·구매강요행위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행위 금지 일반 규정</li> <li>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li> <li>지적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요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시 관계부처 시정조치 요구</li> </ul>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li> <li>불공정행위 금지 일반 규정</li> <li>공정·신의성실 계약 체결·준수의무</li> <li>표준계약서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시 관계부처 통보</li> <li>공정·신의성실 계약 체결 준수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li> </ul>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환경개선 규정</li> <li>표준계약서 마련</li> <li>영화업자의 공정 유통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유통의무 위반시 관계부처 통보</li> <li>근로환경개선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li> </ul>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유정주 의원 등이 2020. 12.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고, 김승수 의원이 2022. 11. 24. 관련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3. 3. 29. 두 법률안을 함께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2. 제정안 내용

제정안의 적용 영역인 '문화산업'은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의 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 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대중문화예술 관련 각 산업을 포괄합니다.

제정안은 문화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10가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금지행위를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 ① 제작행위 방해: 투자배급사, 방송사가 방영 권한, 배급 권한을 이용해 특정한 제작인력을 지정, 변경하거나 출연진을 변경하도록 제작사와 감독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연재하던 웹툰 작가에게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강제 연재 종료를 요구하는 행위
-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유통업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일러스트화 등에 대해 무리한 수정 요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온라인 게임 공급업체의 게임 제공을 위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 일체를 무상 양도하도록 콘텐츠 제공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⑤ 비용 전가: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상영권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대량으로 발급하는 행위
-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영화배급업자가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방영권을 공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뮤지컬, 공연 등의 티켓판매사가 공연기획사에게 해당 플랫폼에만 공연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애니메이션의 낮은 광고 수익을 이유로 방영권료를 편당 제작비 대비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경우
- ⑨ 문화상품 사재기: 대량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순위, 게임인기순위를 조작하는 경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엔터테인먼트에서 소속 작곡가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회사가 영구히 행사한다는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문화산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을 마련,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제정안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시사점

최근 이슈가 된 '검정고무신'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콘텐츠 산업 등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서는 여러 정부기관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문화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입니다.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콘텐츠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규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Contacts

###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임철근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8

E. [cglim@yoonyang.com](mailto:cglim@yoonyang.com)

###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 설지혜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1

E. [jhseol@yoonyang.com](mailto:jhseol@yoonyang.com)

### 김찬

변호사

T. (+82) 2 6182 8704

E. [ckim@yoonyang.com](mailto:ckim@yoonyang.com)